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24시간 신고접수)

신고전화시 가장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연결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 직무상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 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6 제2항)
-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 12항,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상세 직군은 뒷면 참고

노인학대 신고 방법

1단계) 노인학대 의심 및 발견

- 노인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하기
- 노인 및 보호자를 관찰·면담하여 노인학대 가능성 파악
- 응급상황 시 노인 안전 우선확보

2단계)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129)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신고 시 학대의심내용, 노인 및 학대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3단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하기
- 의심스런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노인보호전문기관 연락하기

노인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비난·모욕·위협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주먹 등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 자신에 대한 주요결정에서 소외시킨다.	·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 성적수치심을 주는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4항

이에 신고의무자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노인 관련업무)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할 때는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및 주요정보에 대해 설명

신고자 비밀보장은 되나요?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3항』
-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복지법제57조』
-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학대피해노인 보호절차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 현황

시도	전국기관	관할지역	전화번호
서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www.noinboho.or.kr	02)3667-1389
	서울남부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02)3472-1389
	서울북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02)921-1389
부산	부산동부	중구, 서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강서구	051)468-8850 051)441-8359
	부산서부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기장군	051)867-9119
대구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053)472-1389
인천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032)426-8792~4
광주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062)655-4155~7
대전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042)472-1389 042)472-1390
울산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052)265-1389 052)265-1380
경기	경기남부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031)736-1389
	경기북부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031)821-1461
	경기서부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오산시	032)683-1389
강원	강원(영서지방)	춘천시,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033)253-1389
	강원동부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청진군	033)655-1389

시도	전국기관	관할지역	전화번호
충북	충북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043)259-8120~2
	충북북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043)846-1380~2
충남	충남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세종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041)534-1389 041)534-9222
	충남남부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041)734-1389 041)734-1398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063)273-1389
	전북서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063)443-1389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나주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강호군, 화순군	061)742-3071 061)753-1389
	전남서부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영광군, 함평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신안군	061)281-2391
경북	경북	포항시(남구, 북구),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울진군, 울릉군	054)248-1389
	경북서부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김천시, 구미시, 안동시, 예천군, 군위군, 청송군, 양양군, 의성군, 봉화군	054)655-1389 054)436-1390
경남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창녕시(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055)222-1389
	경남서부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055)754-1389
제주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064)757-3400